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 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tunacan@korea.kr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차 례

I.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	1
II.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	2
III. 폰트 파일 관련 상담 사례(Q & A)	3
1.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문제	3
2.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문제	4
3.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문제	5
4.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문제	6
5.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문제	7
6.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파일의 무단이용 문제	8
7. 사적 복제로서의 면책 여부	9
8.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문제	10
9. 직원의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제	10
10.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문제	11
11.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의 이용 문제	12
12. 폰트 파일의 사용권 제한	13
[부록] 폰트 파일 저작권 개념	14
1. 폰트의 정의	14
2. 폰트에 대한 보호	15
2-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폰트 파일	15
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16
4. 폰트 파일의 저작자	17
5. 올바른 폰트 파일의 이용	17
6.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	19
7. 폰트 파일 저작자의 권리구제	20
7-1.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문제	21
7-2. 폰트 파일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	21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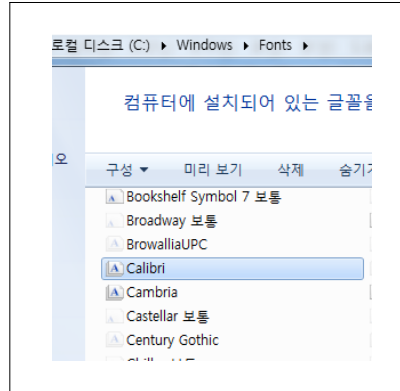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여부)

폰트 도안



VS

폰트 파일



저작물성 부정(보호대상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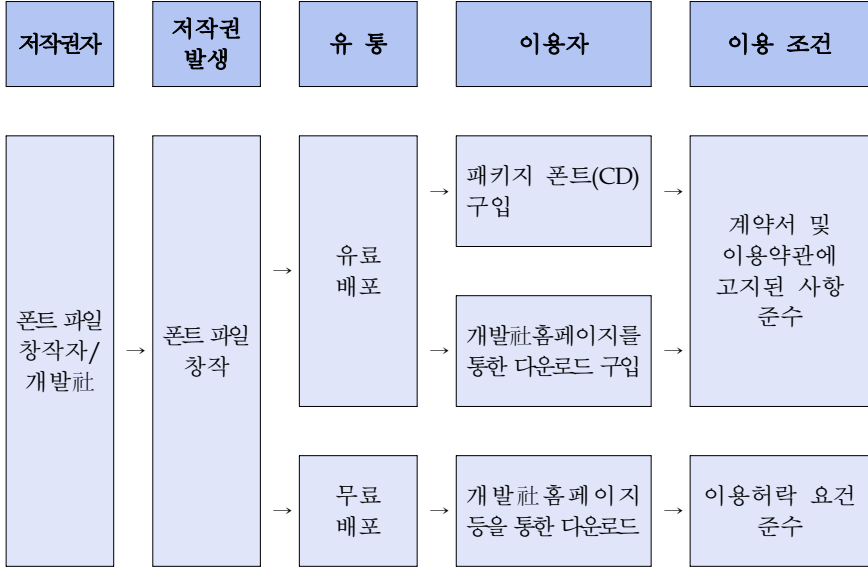
⇒ 글자의 모양(글자체)으로 알려진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저작물성 긍정(보호대상임)

⇒ PC의 fonts(c:\windows\fonts) 폴더에 "OOO.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임

II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



III

폰트 파일 관련 상담 사례(Q & A)

1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A프로그램’과 ‘B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다. A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이용하고자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저작권법에서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구매한 A프로그램 설치시 자동적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정품 프로그램 설치시 자동적으로 복제되어 설치되는 폰트 파일을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프로그램 설치시 동의하는 형태의 약관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설치된 A프로그램의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약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관 :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 약관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되며(대법원 선고 84다카 122판결 참조)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약관이 공정한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에 대한 설명·고지 의무에 충실했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항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폰트 파일의 입수가 가능하다. 권리자 표시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권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권리자 표시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권리자 표시 등이 없다고 하여 해당 폰트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폰트 파일에는 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저작권자가 있으므로 적법한 구매 등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A가 웹 디자이너 B에게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B는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에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B의 폰트 파일 무단사용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가? 또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삭제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웹디자이너 B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 B에게 있습니다.
 - 그러나 의뢰자인 A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만든 이미지 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 등)에 대해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미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B인쇄소가 A업체로부터 현수막 인쇄 의뢰를 받아 출력을 했는데,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유는 현수막에 이용된 A업체의 CI가 자신의 글자체로 만들어졌으며, A업체에게는 허락을 했으나 B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무법인의 주장이 타당한가?

-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폰트 파일의 이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A업체가 디자인한 CI(Corporate Identity)의 이미지를 받아 현수막으로 출력한 경우 B인쇄소는 해당 폰트 파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은 B인쇄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B인쇄소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인쇄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폰트 파일 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외주제작 업체가 CAD로 작업해온 설계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내 컴퓨터에 해당 글자체가 없어서 글자가 깨져 보인다. 해당 글자체를 작업에 활용하지 않고 업무상 단순 확인만을 위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가 부여됩니다.
-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되며, 외주제작 업체가 작업한 설계도를 단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파일 무단이용]

폰트 파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위반행위인지 몰랐다. 모르고 이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 중 DMB 시청 행위가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금지행위로 되었으며,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단속되더라도 운전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 따라서 폰트 파일을 권리자 허락없이 복제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편,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남용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사범의 양상 방지를 위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교육을 받아 형사상 기소가 유예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 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적 복제로서의 면책 여부]

저작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폰트 파일)의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하고 있습니다.
-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더라도 폰트 파일을 전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품을 구매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또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인터넷상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쓰여진 폰트가 모든 이용자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web) 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저장행위 즉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8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A폰트를 반드시 이용하고 싶은데,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저작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허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 02-2660-0102)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9

[직원의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회사의 책임]

디자인 회사 직원이 특정 폰트를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해당 폰트가 없어서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이용하였다. 이런 경우 무조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그 회사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41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사내 직원들이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 시행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가? 또한,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해주는 기관이 있는가?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제도는 조정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써,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 02-2660-0104)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의 이용]

인터넷 상에서 다음 글꼴, 네이버 나눔글꼴 등 무료 폰트들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폰트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업체는 다음 글꼴, 네이버 나눔글꼴 등과 같은 수많은 무료 폰트들을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이용조건(라이선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폰트별 이용조건(라이선스)

- 다음(DAUM) 글꼴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기업의 BI, CI 및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명시적인 승인 요망)
- 네이버 나눔글꼴예코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 금지)
- 제주전용폰트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 또는 양도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 개발 폰트 : 개인 및 기업 무료
- KoPub 서체 : 개인 및 기업 무료(수정, 변형, 임대 및 재판매 금지)

[폰트 파일의 사용권 제한]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게임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폰트 파일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저작권자는 게임 제작을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고소한다고 한다. 저작권자의 주장이 정당한가?

- 폰트 파일에 대해 저작권자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되고 이에 대해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폰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등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매하였고, 게임 제작을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별도의 복제 행위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폰트 파일 패키지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게임 제작에 사용하였다면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작된 게임을 시중에 출시한다고 하면, 해당 게임 구동시 해당 폰트가 이용자의 기기에서 읽혀지기 위해서는 게임내에 폰트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시된다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CD 등 유형물을 통해 출시된다면 배포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폰트의 정의

- 폰트(font)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함¹⁾
- ※ 폰트(font)는 실무적으로 글자체, 폰트, 글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 다양하게 표현되며 본 자료에서는 폰트라고 지칭함

□ 1973년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 기탁에 관한 빈(wien) 협정”에서는 폰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제2조 타이프페이스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한 벌의 디자인을 말한다.

1. 악센트 기호나 구두점과 같은 부속물을 포함하는 문자, 및 그들을 포함하는 문자로서의 알파벳
2. 숫자 및 관용적인 기호나 심벌, 과학기호 등의 도형적 기호
3. 테두리 장식, 꽃무늬 장식 및 책의 장식모양 등의 장식

한 벌의 디자인은 인쇄기술에 의한 문장을 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도된 것일 것. 단, 순수하게 기술적인 요구에 의해 형태가 결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1) 이상정, “글자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2001.12), 3면.

2. 폰트에 대한 보호

- 우리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폰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2-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폰트 파일

- **폰트와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구분되며, 법원은 폰트 자체의 보호는 부정하는 반면에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고 있음**
- 폰트 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하며, 그 소스코드가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음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컴퓨터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음(저작권법 제4조)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호됨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함
 -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 등록·납본·기탁 등의 절차 및 ▲ 성명표시 또는 이용금지 표시 등 필요 없음
-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이며, 보호기간이 만료 되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
 - 프로그램 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업무상 저작물 : 공표한 때로부터 50년
 - ※ 저작권 보호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

4. 폰트 파일의 저작자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또는 **프로그램 창작을 기획한 업체(회사)**에 있음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함
 -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자연인**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을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으며, 이때의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함
 - **업무상저작물**
 - **법인·단체 등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

예) 프로그램 개발자가 회사의 기획 하에 창작한 프로그램은 회사가 저작자가 되며, 신문기자가 작성한 신문기사 및 업무상 촬영한 사진 등은 신문사가 저작자가 됨

5. 올바른 폰트 파일의 이용

● 합법적인 폰트 파일 구매

- 폰트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폰트 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함
- 단,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함**

- 폰트 파일이 불법복제된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역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무료 폰트 파일의 이용

- 권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
 - 바탕체 한글, 돋움체 한글, 궁체 흘림체, 훈민정음체, 제목 돋움체, 제목 바탕체, 쓰기 흘림체, 궁체 정자체, 쓰기 정체 (이상 9종)
 - ※ 다운로드 홈페이지 : 한국글꼴개발연구원 (http://www.sejongkorea.org/sub/sub05_01.php)
 - KoPub돋움체, KoPub바탕체 (이상 2종)
 - ※ 다운로드 홈페이지 : 한국출판인회의 (<http://www.kopus.org/default.asp>)
 - 바른바탕체, 바른돋움체 (이상 2종)
 - ※ 다운로드 홈페이지 : 대한인쇄문화협회 (<http://www.print.or.kr>)

● 법정허락제도 이용

-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 받지 못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가능 함

- 법정허락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02-2660-0102)에 문의 가능함

6.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

- 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짐
- 따라서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 포함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으로 구분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7. 폰트 파일 저작자의 권리구제

- **폰트 파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등의 저작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상의 구제 신청이 가능함**
- **민사 구제**의 방법으로 피해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됨(민법 제766조)
- **형사 제재**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는 고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당국에 요구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권 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저작권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음**(저작권법 제140조)
 - 다만,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함
- *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악의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임(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7-1.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문제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 사용인 또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등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부담함 (저작권법 제141조)

7-2. 폰트 파일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

- 폰트 파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계약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 받은 편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계약서 또는 사용약관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을 경우, 권리자와의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